

신청 정보

신청번호	1AA-2609-1123900
신청일	2026-09-25 22:26:27
신청인 구분	개인
진행상황 통지방식	전자우편 , 누리집(홈페이지) , 휴대전화
민원답변 통지방식	전자우편, 누리집(홈페이지)
보안 설정	아니요

민원 신청 내용

민원종류	일반민원
제목	고양시 「적층식 랙(RACK) 설치기준」의 유효 여부 및 ‘물품 보관 용도’ 해석 질의
내용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고양시 「적층식 랙(RACK) 설치기준」 안내문을 첨부합니다. 안내문에는 적층식 랙의 바닥면적 제외기준으로 “상부 및 하부 모두 물품 보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안내문은 고양시가 공식적으로 작성·배포한 자료이며, 답변일 현재도 유효한 기준입니까? 변경되었다면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의 “상부 및 하부 모두 물품 보관 용도로 사용할 경우”라는 표현은 적층식 랙의 상부와 하부가 모두 실제로 물품 보관을 주된 용도로 사용되어야 바닥면적 제외기준을 충족한다는 의미입니까? - 적층식 랙에서는 화물의 보관뿐 아니라 포장·해체·재포장 등 유통가공을 포함한 물류활동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내문에서 적용대상을 ‘물품 보관 용도’로 한정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근로자가 적층식 랙의 상부 또는 하부에서 집품·분류·포장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물품 보관 용도’로 보는지, 아니면 작업공간으로 보아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물품 보관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류활동과 근로자가 일정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구분한다면, 그 판단기준도 함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고양시가 작성한 안내문의 현재 유효 여부와 “상부 및 하부 모두 물품 보관 용도”라는 문구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첨부 파일	고양시 적층식 랙 설치기준.png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609-1197921
접수일	2026-09-28 14:27:32
담당자(연락처)	권오홍 (031-8075-3132)
처리에정일	2026-10-19 23:59:59 1차 연장 기간: 7 일, 종료예정일시 : (변경전) 2026-10-07 23:59, (변경후) 2026-10-19 23:59 - 사유 : 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검토 등 - 연장결정일 : 2026-10-06 08:58:08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통지일	2026-10-19 17:43:02
처리결과(답변내용)	1.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609-1123900)은 “적층식 랙 설치기준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적층식 랙의 설치기준은 현재도 유효한 기준입니다. 적층식 랙은 상부 및 하부 모두 물품 보관 용도로 사용되며,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 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다른 용도(사람이 상주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로 사용될 경우에는 적층식 랙으로 보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사오니,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시면 앞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도 조사 참여방법은 나의신문고-민원 신청결과 답변내용 아래 '만족도 평가하기' 버튼을 눌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양시청 건축정책과 권오홍 주무관(☎031-8075-3132)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